

정부,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개정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5월 22일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 실시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농림수산부는 개정안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양성축 발생농장과 전파가 우려되는 인근농장에 대하여 방역상 필요할 경우 야외감염개체와 백신접종개체를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재조합 감별백신을 접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돈장의 종돈(GGP, GP)에는 오제스키병 백신을 접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종돈능력검정기관과 종돈장에서 종돈을 출하할 때는 시험소장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에 종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종돈업자와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양돈업자가 검사기관의 검사를 기피 및 거부하거나 양성축 발생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계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농림수산부가 고시한 요령은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을 정함으로서 오제스키병의 만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수산부고시 제95-31('95. 5. 22)호 제1조(목적) 제8조, 제10조, 제16조 및 제18조의 2의 규정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종돈, 모돈, 종돈업, 양돈업, 종축등록기관, 종축검정기관등의 용어는 축산법에 규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검사대상) 오제스키병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법에 의거 등록된 종돈장의 돼지 2. 축산법에 의거 등록 또는 허가받은 양돈장의 돼지 3. 양돈장에 입식하는 돼지 4. 기타 검사 필요성이 있는 양돈장의 돼지	제3조(검사대상) 1. 2. 3. 4. 밀집된 양돈단지 및 기타 검사필요성이 있는
제4조(검사실시기준 및 검사대상 선정) ① 돼지오제스키병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돈장에 대한 검사는 매반기별로 1회이상 실시 2. 양돈장에 신규 입식하는 돼지는 전두수 실시 3. 기타 양돈장에 대한 검사는 발생이 의심되거나 검사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 ② 검사대상은 종돈과 모돈 또는 개체의 증상으로 보아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순서로 선정하여 가급적 돈사별로 고른 비율이 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 두수를 선정하되 별표1의 기준두수 이상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오제스키병의 분포 확인이나 추적조사를 위하여 도축장에서 도축중인 돼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4조(검사실시기준 및 검사대상 선정) (현행과 같음)
제5조(검사기관) ① 오제스키병 검사는 다음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1.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 2. 가축위생연구소장(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동물병원을 개업한 수의사 또는 양돈장의 관리수의사 <신 설>	제5조(검사기관) ① 다음 각호의 1.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시험소"라 한다). 2. 수의과학연구소 3. 4.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훈령 제79호) 제3조 제4호에 의해 농림수산부장관이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한 연구기관 5. 국립동물검역소[수입돼지 검사실시] ② ③ 시험소이외의 기타 검사기관에서 검사결과 양성축 발생 농장을 검색한 경우에는 발생지역 관할 시험소장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검사방법) 오제스키병 간이진단킷트로 검사하거나 또는 혈청중화시험을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제6조(검사방법)간이감별진단킷트법, 병원체검사 또는 혈청중화시험(백신을 접종하지 아니한 양돈장과 종돈장에 한함)을
제7조(검사결과 조치) 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검사결과 양성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혈청검사결과 양성축 발생농장에 대하여 가축 이동제한, 출입제한, 소독실시등 필요한 긴급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조치를 위하여 경찰이나 양돈협회 및 공수의등 필요한 기관의 협조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에 임하여야 한다. 3. 사육중인 돼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발생농장의 사육중인 돼지 전두수 검사 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이환돈은 전두수 살처분 4.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혈청검사 양성돈은 시험소장이 지정하는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도축하여야 한다. 5. 항체검사결과 양성축 발생농장의 모든 돼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균절농장으로 인정될 때까지 도축장이외의 타장소로 이동 또는 판매하지 못한다. ② 양성축 발생농장중 오제스키병 균절농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육중인 돼지 전두수를 매3개월 간격으로 연속 2회 검사한 결과 음성일 경우에 본병 균절농장으로 인정한다. ③ 시험소장은 종돈장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당해 종돈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종돈장 정문에 별표2의 비발생농장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④ 시험소장은 양돈장의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축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축주는 양돈장에 신규입식하는 돼지에는 음성으로 호가인된 돼지에 한하여 입식하여야 하며, 양성축 발견시에는 가축 전염병예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수산부장관은 양성축 발생농장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검사결과 조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1. 검사결과 2. 3. 가. 모돈과 종옹돈은 전두수 검사하고, 자돈과 비육돈은 별표 1의 기준두수이상 검사 나. 전두수 살처분하여 소각 또는 매몰 4. 5. 검사결과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가축이동제한, 출입제한등 필요한 긴급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양성축 발생농장과 전파우려가 있는 인근농장에 대하여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야외감염개체와 백신접종개체를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재조합 감별백신을 접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돈장의 종돈(GGP, GP)에는 오제스키병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
제8조(수입종돈에 대한 사후관리) 국립동물검역소장은 수입종돈 검역결과를 검역종료 즉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험소장으로 하여금 검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간 다음과 같이 특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종돈은 입식 양돈장에서 별동의 돈사에서 격리 사육 2. 수시 임상검사 및 종료시 혈청검사 실시	제8조(수입종돈에 대한 사후관리) 1. 2. 격리사육 종료시 시험소장의 확인검사 실시
제9조(종돈등록과 검정시 확인인등) ① 종축 등록기관과 검정기관에서는 당해 반기중 오제스키병 혈청검사결과 음성인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에 한하여 등록 또는 검정을 실시한다. ② 시·도지사는 종돈장에 대한 정기검사시 오제스키병 혈청 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신 설)	제9조(종돈등록과 검정시 확인인등) ① ② 도지사는 검사 ③ 종돈능력 검정기관과 종돈장에서 종돈을 출하할 때에는 시험소장의 검사확인을 받은후 판매하여야 한다. ④ 종돈장의 종돈(GGP, GP)에는 오제스키병 백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시험소장은 종돈장 정기검사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방역조치) 농림수산부장관은 돼지오제스키병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이 요령이외의 특별방역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별칙적용) 시·도지사는 종돈업자가 이 요령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기피 및 거부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계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제11조(별칙적용) 도지사는 종돈업자 및 등록 또는 허가받은 양돈업자가 거부하거나 양성축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